



# 의 정 부 지 방 법 원

## 제 3 형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23노668 강제추행  
피 고 인 이순국 [REDACTED]  
[REDACTED]  
항 소 인 쌍방  
검 사 김태훈(기소), 이지영(공판)  
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 
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고단2750 판결  
판 결 선 고 2024. 5. 17.

### 주 문

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원심판결 제4쪽 1 내지 3행의 "제56조 제1항 단서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"를 "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21. 1. 12.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6조 제1항 단서, 구 장애인복지법(2021. 7. 27.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9조의3 제1항 단서"로 경정한다.



## 이 유

### 1. 항소이유의 요지

#### 가. 피고인

##### 1)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

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비켜달라는 의미와 격려의 의미를 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툭 쳤을 뿐이고,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.

##### 2) 양형부당

원심이 선고한 형(벌금 300만 원, 이수명령 40시간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#### 나. 검사

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# 2. 판단

#### 가.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,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,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.

원심이 상세하게 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[피고인은 피해자가 파프리카 선별장(이하 '이 사건 사업장'이라 한다)에서 해고당한 것에 대한 앙심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, 이에 관하여 보면, 이 사





건 범행은 2021. 8. 9. ~ 10.경 발생하였고, 피해자가 2021. 8. 25.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점, 피해자는 위 해고가 해고의 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자 2021. 10. 1. 복직되었는데, 이 사건 사업장은 그후 2021. 10. 9. 피해자에 대하여 구두로 휴직 명령을 한 점, 피해자는 2021. 11. 22. 위 휴직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다시 하였고, 2021. 12. 2.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한 점, 이 사건 사업장은 2021. 12. 7. 피해자에 대한 해고의 예고통지를 한 점,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. 2. 3. 이 사건 사업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휴직 명령은 부당한 것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피해자가 당초부터 부당한 권리 구제절차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피해자는 위 휴직 명령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구제신청을 할 무렵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고소를 통해 공적으로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치부할 수 없다].

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나.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

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(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,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,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.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, 1회에 그친 반면,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.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



기와 경위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.

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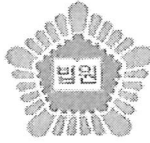
다만, 원심판결 제4쪽 1 내지 3행의 "제56조 제1항 단서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"는 "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21. 1. 12.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6조 제1항 단서, 구 장애인복지법(2021. 7. 27.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9조의3 제1항 단서"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,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이성균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정명진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김병인 \_\_\_\_\_





# 등본입니다.

2024. 5. 21.

의정부지방법원

법원주사 정진욱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